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5. 1. 22.(목)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21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차량공유 앱 ‘우버’ 서비스 관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건 (2015-02-00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차량공유 앱 ‘우버’ 서비스 관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차량공유 앱인 ‘우버(Ub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유한회사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를 미준수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우버’ 앱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공유 앱 우버는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서, 승객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을 배차하고 있습니다. ‘우버’ 서비스 가입할 당시에 휴대폰 및 신용카드 번호 등록이 필요하고, 이용할 경우에는 차량에 비치된 단말기로 확인된 이동 경로와 요금에 따라 자동으로 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우버는 2010년 미국에서 시작하여 금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54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국내에는 2013년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현황은 영업금지 등 제재를 하고 있는 국가와 또는 사법부가 판단할 때까지 처분을 보류하거나 또 일부 합법화한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경과입니다. 작년 10월 우리 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우버의 위치정보법 위반을 회신한 바 있으며,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법부의 판단 이후 우버 차단에 관해 심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22일 서울시의회는 우버 택시 신고자에 포상금 수여 조례를 마련하였고, 그해 12월 24일 검찰은 우버코리아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2일 서울시는 우리 위원회에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해서 고발에 관련된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다음은 위반사항입니다. 우버코리아는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우버코리아에 대해 동법 제40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에 위치정보법상 신고 관련 규정과 고발 관련 타법의 규정 등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우버 택시 영업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보도한 바 있고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IT와 택시를 융합해서 시민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IT 융합 사업인 IoT(Internet of Things)의 발전가능성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개인정보보호일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업체 우버코리아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글코리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인데 시민 개인들이 일시적으로 편리함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실정법, 제도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시적인 편리함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다국적기업일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정보의 인권뿐만이 아니고 나라의 실정법, 제도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주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편리함보다는 개인정보보호와 나라의 정보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로서는 위치정보보호법 절차, 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와서 영업을 했으면 이것은 당연히 실정법 절차에 따라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객운수법 같은 것은 사법당국에서 판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뿐만이 아니고 저는 나라의 정보주권을 지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도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디지털 산업, IT 융합서비스 기반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서 영업을 할 때에는 우리 국내 실정법과 제도적 절차를 특히 더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라는 것은 등록보다는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여건이 조금 약할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신고도 우리가 이것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이냐'에서부터 '순수하게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냐'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뒤에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도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오늘 이 건을 검토하는 것은 이미 지난해 10월 우버의 서비스가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해서 저희의 입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저희 입장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때도 이미 위치정보법을 위반하였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도 그와 동일한 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현황자료를 보면 우버 본사가 설립된 것이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이 되었고, 2010년 6월부터 영업을 개시가 됐습니다. 먼저 영업을 개시한 캐나다, 벨기에, 호주, 영국, 미국 등에서 서비스사업자 자격 취득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버코리아는 2013년 5월에 상법상 유한회사로 설립되었고, 시기적으로 보면 세계 주요 국가에서 적법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운송 혹은 정보통신 관련 법규위반 논란이 있다는 것은 우버가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우버가 설립 당시라든가 지난해 서울시, 그리고 방심위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스스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적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스스로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버와 사업 콘셉트가 비슷한 것이 라인택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콜택시와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다음카카오의 경우에도 금년 1분기 중으로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유사한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버의 경우에는 논란을 자초하는 그런 사업모델을 강행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우버의 노이즈마케팅 아니냐는 그런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라고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되었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비스를 강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는 우버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이나 서비스 선택권 보장보다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개인정보보호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 일부 주나 호주, 인도 등에서 우버 기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법의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택시운전자격 취득자에 대해 강력범죄자, 마약사범, 성폭행범, 그리고 아동성범죄자 등은 20년이 경과해야만 그 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이 되지 않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버의 경우는 이러한 우려, 운전자들의 경력이나 범죄이력과 같은 검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버코리아는 “법이 기술발전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법을 무시하고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이용자의 권익이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고발 건과 별도로 미국 보스턴시 같은 경우 우버와 시 당국이 협의해서 교통정책 분야에서 상생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국가

나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세수 확보 등을 위해 합법적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발 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 나름대로 우버에 대한 정책적인 입장을 한 번 정도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해외사례에 주요 국가별로 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앞서 두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해외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법률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다면 해외에서 미국이든 영국이든 유럽의 다른 나라든 간에 우리와 같은 이런 법률을 근거로 제재를 하거나 신고를 받는 사례는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재를 하는 이런 경우도 교통 내지는 운수사업과 관련된 법규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따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해외사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방통위에서 위치정보법에 근거를 두고 지금 우버에 대한 고발 여부를 논의하는 이런 안건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측면도 같이 고려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방통위 소관 위치정보법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신고 여부를 가지고 고발조치를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 위치정보법 벌칙조항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행정법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와 같은 정도의 형벌에 처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것도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경우에 확인해 본 결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치정보법이 오히려 운수사업법보다도 더 강화된 형태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만약에 우버코리아에서 오늘 저희가 어떤 의결을 하든 상관없이 방통위에 신고해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겠지만 박 국장님이나 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업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소재지와 그다음 주요 설비에 대한 것, 마지막으로 위치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방통위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통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관련 법령을 보니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지금 봐도 위치정보법에 의한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위치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증명서류를 신고할 때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허가 받은 위치정보 사업자뿐만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조차도 법 제16조 그리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그것이 매우 특이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어쨌든 굉장히 중한 벌칙을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다른 행정법규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위치정보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위치정보법의 이름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치정보보호 이야기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기술개발, 표준화, 이용촉진 이러한 업무도 우리 방통위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치정보사업을 활성화하고 이용을 촉진하고 이런 진흥적인 업무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통위에서는 위치정보보호, 위치정보도 일종의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다른 실정법상 우버의 법규 위배 여부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또 중요한 측면은 위치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사업이 활성화되게 하고 이런 측면도 저는 고려해야 한다, 어떤 이슈가 생기면 한쪽 방향으로만 저희가 쪽 이야기하는 것은 방통위의 기본적인 미션과 자칫하면 일탈할 우려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건을 보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행법상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팩트는 우버코리아가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았고, 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조항에 따라 이런 형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문서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고발 협조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는 명문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지만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에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세계 유일의 위치정보법이라는 실정법을 오래 전부터 제정·시행해 오고 있고, 방통위가 위치정보보호뿐만 아니라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사업 활성화, 진흥 이런 임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단순히 일상적인 케이스로 볼 것이 아니라 많은 정책적인 시사점, 즉, 방통위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올린

안건 내용에 대해 저는 동의를 하면서 우리 사무처에 한 가지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제3기 방통위 이후에 위치정보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몇 차례 제안한 것처럼 차제에 위치정보사업 진흥에 대한 종합계획을 방통위가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규제기능을 주로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위치정보와 관련해서는 미래부나 타 부처와 나누어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유일하게 이것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진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제에 그 계획의 일환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협회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없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위치정보사업자들의 일종의 사단법인 형태의 협회도, 물론 협회라는 것이 저희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매년 국내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니즈가 있고, 또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자꾸 이쪽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현행 제도에 대한 설명도 하고 필요하면 교육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업자들끼리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연구도 하기 위해서 그런 협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들과 협의해서 그런 협회를 차제에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확인 좀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간단히 확인하시겠습니까? 고삼석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일 경우 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고라는 것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당국에 신고함으로써 바로 사업자의 자격을 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법 제9조를 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의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고의 구체적인 절차, 실질적인 요건이 있다면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수리행위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위치 정보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법 위반이나 공익적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거부 가능할 것이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버 서비스의 법적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 이기주 상임위원

-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짧게 하면 우리가 신고다, 허가다, 그리고 또 신고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분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단답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치정보법을 소관하는 방통위가 타법의 위반 여부 때문에 위치정보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것은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 많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일단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이기주 위원님 의견에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실질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우리나라가 워낙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 많아서 그것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그동안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위치정보 또한 중요한 개인정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문제에 관해 관심을 깊게 갖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기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기술의 진보에 따른 진흥적인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국회에서 법과 관련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중에서도 사물과 관련된 부분은 당초 신고조항이 있었던 것을 면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이기주 위원님의 그런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소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신고사항을 보고 과연 이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고 관리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업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하고, 또 사후에라도 문제가 되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리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신고조항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버가 전 세계 54개 국가에서 서비스가 운영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다양한 판단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는 것이 많은 것 같고, 시작을 했던 미국의 일부 주에서 그리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항고심에서 인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곳 정도에서는 합법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경우에 보면 분명히 우리는 위치정보법이라는 실정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사 설립 이후에 8개월이 지났고 그리고 이 문제가 제기 된지도 벌써 3개월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고라고 하는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실정법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 자체가 개인의 금융정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더더욱 중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다 더 우리가 엄격하게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통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사시에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때 피해자 문제, 고객의 안전문제까지 고려하면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우버코리아가 신고해 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위법행위가 저질러졌습니다. 지금 신고해 올 경우에 수리 여부입니다. 이 회사가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법률과 제도에 대해 사전지식과 정보가 없고 무지했거나 두 번째는 준법 의지, 준법정신인데 실정법과 제도에 대해 준수하고 절차를 지켜가면서 영업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여부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는 개인정보보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정보주권 침해입니다. 그 2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고의 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코리아,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개인의 대문 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것을 정보화하는 것을 유럽 국가들이 다 반발하고 제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저는 정보주권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 플러스 정보주권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을 줄이기 위해, 지금 신고해 오고 그것을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저질러진 위법행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재대상입니다. 그것이 맞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래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는 이미 위법행위를 했고, 또 여객운수법에도 이것은 불법영업입니다. 불법행위를 했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준법 의지 문제이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되,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질러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위법행위 조각사유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2가지를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 형사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 위치정보법 위반, 즉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이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그 법 위반을 조사할 수가 있고 또 고발이기 때문에 위치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만이 반드시 고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3자 누구든지 그와 같은 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이 위치정보사업, 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저희에게 요청이 와서 검토가 된 이상 저희가 법 위반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와 같은 고발이 되었을 경우에 우버코리아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고를 해 오더라도 기존에 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또 어떤 사항을 저희가 살펴봐서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신고 내용,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절차 등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는 앞으로의 상황을 가정해서 잠정적으로 하는 논의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신고가 있을 때 다시 본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0분 폐회 】